

# 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

(정진술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68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9월 22일

발 의 자: 정진술, 강동길, 김 경,  
김기덕, 김성준, 김인제,  
박강산, 박수빈, 박승진,  
박유진, 박철성, 봉양순,  
서준오, 성흠제, 송도호,  
송재혁, 아이수루, 왕정순,  
, 유형찬, 유정희, 이민옥,  
이병도, 이상훈, 이소라,  
이승미, 이영실, 이용균,  
이원형, 임규호, 임만균,  
임종국, 전병주, 정준호,  
최기찬, 최재란, 한 신  
의원(36명)

## 1. 주문

-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, 스토킹 범죄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스토킹 및 보복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「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을 요구함.

## 2. 제안이유

- 현행 「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은 ‘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’는 반의사불벌죄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합의종용과 협박을 목적으로 하는 2차 스토킹과 보복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.
-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수사기관과 법원 등이 스토킹 범죄를 ‘당사자 간 풀어야 할 개인적인 일’ 또는 ‘상대적으로 죄질이 낮은 범죄’로 판단하여 피해자에 합의를 종용하거나, 낮은 처벌, 영장기각 등으로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였음.

- 스토킹 범죄는 반복·지속되는 경우가 많고,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가중처벌 조항 규정 마련도 시급함.
- 이에 반의사불범죄 폐지와 가중처벌 조항 마련,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강화 등을 통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「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의 신속한 개정을 건의함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』

다. 기타 : 없음

### 4. 이송처

- 가. 국회: 보건복지위원회
- 나. 정부: 여성가족부

## 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

- 스토킹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괴롭히는 불법적인 행위로, 지속적·반복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,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폭행, 협박,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, 스토킹 범죄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스토킹 및 보복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「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
- 현행 「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은 제18조제3항에 ‘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’고 명시, 반의사불벌죄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합의종용과 협박을 목적으로 하는 2차 스토킹과 보복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
-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수사기관과 법원 등이 스토킹 범죄를 ‘당사자 간 풀어야 할 개인적인 일’ 또는 ‘상대적으로 죄질이 낮은 범죄’로 판단하여 피해자에 합의를 종용하거나, 낮은 수위의 처벌, 영장기각 등으로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.

- 국회의 자료에 따르면,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스마트워치, 112신고, 고소 등을 통해 재신고한 경우만 7772건에 달하지만, 이중 구속수사를 한 건 211건으로 전체 재신고 건수의 2.7%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
- 또한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올해 7월까지 경찰이 접근금지 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가해자를 검찰로 송치한 건 4016건 중 구속 송치된 건 238건으로, 대부분이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.
- 스토킹 범죄는 반복·지속되는 경우가 많고,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가중처벌 조항 규정 마련도 시급합니다.
- 스토킹의 기간·대상·반복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을 두어 스토킹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, 현재 1개월을 넘길 수 없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조치 기간과 최대 4개월을 넘길 수 없는 접근금지 기간 확대, 잠정조치 불이행죄 처벌강화,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조치 강화,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그 외 별도의 신변안전 조치 규정 마련 등을 통해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- 이에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가중처벌 조항 마련, 스토킹 범죄에 대한

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강화 등을 통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「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의 신속한 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.

2022. 9. 22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